

II. HIEM 포커스

1.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결과 분석

1) 제3차 당사국총회 개요

일본 교토(京都)
에서 '97.12.1~
11일까지 기후
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개최

주요 쟁점사항으
로 온실가스 감
축목표 설정과
개도국의 감축의
무 공동참여 문
제 논의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인 기후변화협약의 제3차 당사국총회 개최
 - 이번 회의는 일명 『교토총회』라고 불렸지만, 공식 명칭은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 : The Third Conference of Parties of the FCCC』
 - FCCC :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협약)
 - 일본 교토(京都)에서 1997년 12월 1~11일까지 개최된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세계 160여개국이 참가
- 제3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QELROs)¹⁾의 설정과 개도국의 감축의무 공동참여 문제가 논의
 - 온실가스 감축목표 문제는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인 Annex I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 Annex I 국가는 '92년 협약 당시 24개 OECD 국가와 러시아를 비롯한 구동구권국가 등 38개 국가로 구성
 - 개도국이 감축의무 면제됨에 따라 한국도 면제됨
 - 개도국의 감축의무 공동참여 문제는 선진국 입장과 개도국 입장이 명확히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를 강력히 주장

1) QELROs :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 G-77 및 중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공업국들의 역 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감축의무 주장에 반대

2) 총회 결과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교토 의정서」 채택

감축의무 대상국 가별로 -8%~+10%의 차별적인 감축목표율 합의

-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두 번째 환경관련 국제협의로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 38개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이 6개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
 - 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 공동참여 문제는 중국, 브라질, 이란 등의 반대로 의정서에서 삭제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감축의무 대상국의 차별적인 감축목표율 합의
 - 2008~2012년 5년간 -8%~+10%(평균 5.2%)의 감축 목표율 설정
 - 미국 7%, 일본 6%, EU 8% 등 국가별 감축목표를 차등 설정

< 표 1 >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

주요 항목	결정 사항
목표 연도	2008~2012년, 5년간 평균
감축목표율	국가별 차등목표 적용(-8%~+10%)
감축 대상	6개 온실가스 : CO ₂ , CH ₄ , N ₂ O, SF ₆ , HFC, PFC
기준 연도	· CO ₂ , CH ₄ , N ₂ O : 1990년 기준 · SF ₆ , HFC, PFC : 1995년 기준 가능
감축 대책	·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인정 · 유럽연합 공동삭감(EU Bubble) 방식 인정
감축 방식	순배출량 방식(Net Approach)
기금 설치	Clean Development Fund 설치 : 선진국이 기금 양출, 개도국 감축대책 지원
구 속력	법적 구속력을 가짐

< 표 2 > 선진 38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 목표	해당 국가
8% 감축	EU 회원국,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모나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7% 감축	미국
6% 감축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5% 감축	크로아티아
0% 감축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1% 증가	노르웨이
8% 증가	오스트레일리아
10% 증가	아이슬란드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6가지로 확정하고, 감축방식은 순배출량 방식

○ 6개 온실가스를 감축대상으로 하며, 순배출량 방식(Net Approach) 확정

-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CO₂, CH₄, N₂O, SF₆, HFC, PFC 6개 온실가스
- CO₂, CH₄, N₂O는 '90년, SF₆, HFC, PFC는 '95년을 기준연도로 배출 감축
- 삼림과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에 의한 저감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을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등의 도입을 통한 실질적 저감방안 인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²⁾나 공동이행³⁾ 등의 시장 원리를 활용한 실질적 저감방안 인정

-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한 만큼을 자국의 저감 실적으로 계산
- 미국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서 강력

- 2)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뒤 할당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10억 달러를 들여 감축한 이산화탄소량 보다 남미국가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해 감축한 양이 훨씬 많으므로, 미국과 남미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면 지구 전체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 3)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이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진 선진국들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를 선진국의 의무이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 A가 후진국 B의 영토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는 대규모 조림사업을 지원할 경우, 이때의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선진국 A의 봉으로 인정해주자는 구상이다.

하게 주장

EU Bubble 방식의 인정, 크린개발기금의 설치

- EU Bubble 방식을 인정하고, 크린개발기금(Clean Development Fund)의 설치
 - 유럽연합(EU) 회원국간 감축목표를 배분하는 지역 공동작감 방식(EU Bubble)에 대한 인정
 - 개도국 감축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각 출하여 기금 마련

3) 향후 전망

『교토 의정서』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

-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인 『교토 의정서』의 등장
 - 국내 산업, 수송, 가정상업 등 주요 부문별 과급효과와 대책 마련 필요
 -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향 마련

향후 우리나라의 지위 변화 가능성 내재

- 우리나라는 일단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지위 변화의 가능성 내재
 -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 인정
 - 하지만, 1998년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감축의무 대상국 리스트의 수정이 주요 의제로 예정
 - 현재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 부담 압력 가중

국가차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축 노력 필요

-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감축 노력 필요
 - 정부의 구체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과 주요 실천방안의 수립이 전망
 -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마련과 중장기 실천방안의 마련이 필요

하성훈 (환경경영전략팀 주임연구원)